



2026. 4. 17.(금) 09:30
제31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용 관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발의년월일: 2026. 4. 7.
- 발 의 자: 이진환 의원 등 8인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하여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 ‘새내기도약휴가’ 신설
(안 제14조제10항)
- 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와 중복규정 삭제(안 제14조제8항)
- 다. 준용규정 신설(안 제18조)
- 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3)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의회사무국
- 라. 입법예고 : 2026. 4. 7. ~ 2026. 4. 13.(6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전문위원 서용관)

- 본 개정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에게 조직생활의 적응도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새내기 도약휴가’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에 따른 공무원 경조사별 휴가일수 추가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생략>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신상민